

청원산림보호직원 근무성적평가 가·감점 평정기준

1. 가점평정

□ 평정대상

- 근무성적평정기간 중 총 5점의 범위 내에서 가점을 부여함.

평 정 대 상	최대 가점	대상기간
직무관련 자격증	0.65	
실적우수 가점 (실적가점 2, 포상 1)	2.35	근무성적평가대상 기간

- 직무관련 자격증 : 0.65점
 - 산업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농림토양평가관리)
- 실적 가점
 - 기관홍보, 갈등예방·해결, 민원행정 제고(3인 이내) 및 경진대회 입상 등의 실적이 우수한 자로 소속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0.3점 가점 부여

※ 동일한 사유로 실적가점과 포상가점이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것 하나만 부여

· 포상 가점

구 분	가 점
국무총리 표창 이상	1.0점
장관(급) 표창	0.8점
청장(차관급) 표창	0.5점
소속기관장 표창	0.3점

※ 평정대상 기간 중 2회 이상 수상한 경우 유리한 것 1개에 대하여 가점부여

2. 감점평정

- 근무성적평정기간 중 총 5점의 범위 내에서 감점함

감 점 사 유	배 점
견책 이상의 징계	회당 3점
경고·주의, 범죄사실 통보(폭력·음주 등)	회당 1점
민원 야기 또는 대민 불친절	회당 0.5점
산림청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경미한 사항)	회당 0.5점
무단 결근	회당 1점
무단 조퇴·이석	회당 0.5점
지 각	회당 0.3점

- 감점사유는 평정대상기간동안 해당부서의 근무상황부, 감사반 등의 복무 감독부서의 점검기록에 의함.
- 민원 야기는 민원관리부서의 평가에서 민원처리 미흡사례로 평가되거나, 대민 불친절 사례는 민원신고 등에 의하여 잘못이 확인된 경우를 말함. 다만, 평가대상기간동안 민원처리 우수사례로 평가된 경우에는 상계할 수 있음.
- 산림청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경미한 사항)은 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으로 적발되었으나, 주의·경고 또는 징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를 말함.
- 무단 조퇴·이석은 복무 감독자에 대한 허가나 보고(동료 등에 보고 포함) 없이 2시간 이상 무단 조퇴하거나 이석한 경우를 말함.